

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

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(제4조제3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해당 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8조 제4항제1호	지정 취소			
나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교육훈련기관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	법 제8조 제4항제2호	지정 취소			

다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경우	법 제8조 제4항제3호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·훈련·상담 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조 제4항제4호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지정 취소	